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9. 23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7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8월 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59회 임시회 제6차 행정위원회('98. 9. 2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조남성)

가. 제안이유

-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2조)
-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'준용토록 함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준석)

동 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토록 하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던 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'98. 2. 24.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,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의거 마련된 개정안이라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 7. 2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2조)
-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대통령령 제15680호('98. 2. 24) 공무원여비규정
- 인사12500-1090('98. 5. 13) :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포준안

나. 합의사항 : 없음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
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
2. 제17조 제1항 단서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
3. 제18조 제1항 단서중 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”로 “동규정 [별표 1]”은 “동규칙 [별표 1]”로 본다.

4. 제24조 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.

5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6. 제29조 제1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 제2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7. [별표 1]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,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